

「 2018년 하반기 」

자체감사 결과 공개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2018. 11월 자체감사 결과

1 처분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계	7건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군산시 ○○○ ◇◇에 관한 사항	
5	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검사·점수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경로당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 0개 경로당에서 식사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와 정산절차 없이 통장에 남은 금액을 일괄 인출한 뒤, 보조금 정산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 유류구입시 현금으로 인출, 매입한 다음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정산하는 등 제출된 관련 서류 자체를 살펴보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시 관련 부서에 정산 보고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렸음에도 경로당 보조금 지원 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대상자 선정시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근무 및 사업자등록여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년에는 사업자등록자 00명에 대하여 농어업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학자금을 신청한 ㉹㉹면 ㉹㉹㉹길 0-0 ㉹㉹㉹(학생 ㉹㉹㉹)은 컴퓨터 수리 및 유지보수 업종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1~2분기 ***,***(원)의 수업료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관련지침에 따라 사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부당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라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는 등 학자금 지원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3.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금액(2회분, 1인당 **,***원씩)을 이장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정당한 채주가 아닌 옥도면 ○○○ ◇◇ ○○○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군산시 ○○○ ◇◇에 관한 사항

- 20**년 6월부터 20**년 8월까지 00건의 시장, 부시장의 출장◇◇을 제외한 각 실국과의 종합출장 ◇◇을 허가하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한 ☆☆요구서 없이, 目目면장의 ☆☆명령으로만 군산시 ○○○ ◇◇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

5. 급량비(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이장단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실시 후 식대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근매식비 집행시 간담회에 참여한 직원까지 포함함으로써 간담회 식사비와 특근매식비를 중복지급하여 특근매식비 총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6. 물품의 검사·검수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재료비로 꽃을 구입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검사·검수 확인(지출결의서상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 식재 수목류를 식재완료한 후 실제로 식재된 나무와 꽃이 몇 주(본)가 심어졌고, 식재장소별 사진자료,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기하여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방역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

-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유류구입처에서 발행한 전표(유류구입비)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유류수불대장, 방역소독 일지를 기록·관리하고 유류비 정산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8. 目目시설 특정감사 결과

1 처분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계	24건	
1	퇴직충당금 미정산에 관한 사항	
2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사업 등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공사업체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6	무자격업체와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7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기관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제세공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	
10	프로그램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11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1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3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14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5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연번	제 목	비고
16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7	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18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19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1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2	○○○○사업 실비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23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24	물품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퇴직충당금 미정산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1회계년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하므로 매년 발생한 미지급 퇴직충당금을 당해년도 세입으로 조치하고 그 금액을 다음년도 세출에 반영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차량운행자가 과실 또는 과태료 등의 부담으로 적발 사실을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관리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 압류예고 등이 통보되었음이 분명한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등 차량관리에 소홀히 하였으며
- 00라 ***2호 외 1대차량 운행일지에 의하면 명절관련 선물전달, 직원 병문안 및 장례식, 모 법인관계자의 사업장 방문시 등 근무시간내 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3. ○○○○특성화사업 등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 ☆☆☆시설 ○○○○특성화사업 및 ●●보호작업을 운영하면서 ○○ 및 △△사업에 필요한 차량유지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특성화사업 및 ●●보호작업 수익금을 차량운행 경유 구입, 자동차검사 및 보험료 납부로 사용하여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4.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 공사 중 도급 1의 경우 당초 파벽질감도색작업의 계약물량보다 184㎡가 부족하게 시공, 도급 2의 경우 당초 파벽질감도색작업의 계약물량보다 150㎡가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도급 1의 경우 ***,***원, 도급 2의 경우 ***,***원 등 총 *,***,***원에 대한 감액 조치 없이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공사업체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 업체선정심의에 대하여 ☆☆☆도장건설은 견적서와 20**년 공사실적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도장, ◎◎상사, △△△△방염)는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4개업체 모두 심사표 평가항목인 업종의 전문성, 하자보증기간, 신뢰도를 평가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해당 복지시설에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심사표에 따른 배점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심사자는 각 업체별 배점을 실시하였으며,
- 특히 4개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금액을 보면 ☆☆☆도장건설 19,***,***원, ○○도장 13,***,***원, ◎◎상사 20,***,***원, △△△△방염 20,***,***원으로 ○○도장 견적가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표의 가격경쟁 항목에 대한 심사자 4명의 배점 합계결과 4개사 중 가장 낮은 배점을 한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이 실시한 업체선정심의는 형식적 절차요건을 갖추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여 주기식 심의로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는 부적정한 공사업체 선정 심의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6. 무자격업체와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에 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고,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와 체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 사업은 공사에정금액 20**년 19,500천원, 20**년 19,602천원으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7.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나, 20** ~ 20**년까지 총 17건,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8. 세출예산(기관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자녀 축의금 등 복지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를 0회에 걸쳐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로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9. 세출예산(제세공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

-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00회에 걸쳐 ◎◎◎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10. 프로그램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강사를 비롯한 총 00개 사회적응·생활학습 프로그램 등 강사00명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담당강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력서·자격증 등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만 확인하고 부적정하게 강사를 채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11.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장 ○○○은 20**.*.03.20.일 채용되어 연가일수가 00일 임에도 관련 규정없이 전년도 연가보상일이 남았다는 사유로 당해연도 일수에 가산한 오류로, △장 ○○○의 연가일수 또한, 재직기간 산정오류로 인해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0명에 대해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1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에 관한 사항

-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 내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은 단일공사로써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0개 사업으로 분할함으로써 지정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지 않고 비교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13.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사업비로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면서 실제 사업과 관련없는 타 기관 후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행사 참여(바자회, 경로당 나들이 지원, △△△△△ 일일호프행사), 사회복지사 친목행사 등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2015년 ***,***원, 2016년 ***,***원 등 총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14.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낙찰자 결정은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기간 동안 업체선정 및 계약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엔지(대표 ○○○)는 공고문의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기준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 ◇◇이엔지(대표 ○○○)가 20**03.28 제출한 견적금액은 **,***,***원이나 견적금액과 달리 20**04.06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은 금 **,***,***원으로 계약 및 지출(20**06.09)하는 등 금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15.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 준공에 따른 대가 지급전 환경보전비가 법령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공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과 같은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6.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수입금(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을 만들지 않고, 법인회계 통장을 ○○식당 수입금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불임과 같이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식대 수입금 000건에 대해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7. 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20**년부터 20**년까지 0차례에 걸쳐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사실이 있음.

18.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20**년 4월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응시자격을 1)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 2) 운전면허 1종 소지자, 3) 컴퓨터 활용 가능한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등)로 제한하여 공고하면서 자격제한을 위와 같이 3가지 기준을 가진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차선자가 채용된 바 차선자 @@@는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 응시자격 제한을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또한 면접관을 내부위원 0명만이 참여하고, 면접 배점표를 오자정정 날인·서명없이 임의로 수정함으로 채용의 투명성이 결여 되는 등 공고문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음.

19.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 20**~ 20**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공단 및 ◎◎자동차 서비스센터로부터 후원금(품)으로 받아 ◎◎◎◎봉사서비스사업의 추석명절지원비용(떡, 전구입)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30.일 작은○○○에서 떡을 구입하면서 ***,***원으로 업체견적서를 받고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온누리상품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었고, 20**.02.01일 및 02.03일 ☆☆☆☆☆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 총 ***,***원을 후원받아 20**. 02.12일 작은○○○에서 떡을 구입하면서 ***,***원으로 업체 견적서를 받고 계좌이체한 ***,***원만 세금계산서 처리하고 상품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20**년 1건, 20**년 1건 등 총 2건, *,***,***원을 후원품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누락하고 ☆☆☆☆☆공단으로부터 상품권을 후원받으면서 20**. 9. 17일은 2건으로 수입 등재하고 1건만 사용보고서에 등재하였고, 20**. 2. 1일에는 2건으로 수입 등재하고 2건으로 사용보고서에 등재하였지만 실제로는 1건, ***,***원을 후원받았다고 하는 등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용과 관리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계좌 입금 후원자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후원물품 후원자 총 80명, **,***천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나,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인 26명, **,***천원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해당 과세연도 다음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때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자는 신고하고 정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원품 후원자의 내역은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후원금 관리 위반사항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임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0.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2016.03.02.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2016.03.04. 보조금 신청, 2016.03.07. 공사착공, 2016.03.10.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2016.03.11. 공사준공, 2016.03.17. 준공검사, 2016.03.21. 기능보강사업완료보고 및 청구, 2016.03.22 기능보강사업비 지급, 2016.03.25. 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 2016.03.25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교부결정을 하였고, 또한 복지관에서 제출한 기능보강사업 완료보고 및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면밀한 검토 없이 교부결정 전 공사 시행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기능보강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21.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시행공사 중 당초 철거공사가 반영되어 있으나 철거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친환경 1급 목모보드 시공은 계약물량보다 61.3㎡가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계 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금 **,**,**원에 대한 감액 조치 없이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22. ○○○○○ 사업 실비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 20**년부터 20**년까지 교육문화사업인 ○○○○○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납된 실비이용료 중에서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지관 운영 경비인 여비, 공과금, 기관운영비, 협회가입회비, 직원연수비 등으로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23.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종사자 복무규정에 의거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은 후 관외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청구하여야 하나, 공무로 인한 출장과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관장 △△상 문상에 출장여비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24. 물품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물품 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명백한 분류와 물품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지 않고 물품의 출납보관을 한 사실이 있음.

2018. 目目目目사업소 회계감사 결과

1 처분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계	24 건	
1	●○ 티켓판매 정산 및 관람료 세외수입 수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비 지출 대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의 지출	
5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7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9	기술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감독관 임명 관련	
10	옥상 난간 미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관련	
11	연체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13	용역 분할계약에 관한 사항	
14	세출예산(강사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15	피복 구입에 관한 사항	

연번	제 목	비고
16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7	☆☆에 관한 사항	
18	▣▣▣▣▣▣ 전시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9	시설비 대상사업에 대한 재료비로의 집행 관련	
20	○○○ 정책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21	◆◆◆ 투어 기념품 관리에 관한 사항	
22	물품의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23	공금예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2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 티켓판매 정산 및 관람료 세외수입 수납에 관한 사항

-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날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년 4월부터 20**년 6월까지 ○○ 위탁판매 티켓 대금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 00건, ☆☆☆☆ **건의 ○○ 티켓판매 대금이 지연 수납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유료○○ 00건의 관람료를 세외수입으로 납부함에 있어 수납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사용료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 군산○○○○○ 관리·운영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예충시지회장의 추천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 발표회 또는 학교장 및 총(학)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종합복지관 및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일부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예충시지회장의 사용료 감면 추천서를 받아 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인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발표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충시지회장의 추천서만을 근거로 기본사용료의 50%인 총 ***,***원을 잘못 감면한 사실이 있음.
- 사용자가 사용 30일전에 원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20**.10.12일 ☆☆☆☆유치원에 소공연장을 사용허가 하였고 사용자가 20**.12.08일 제출한 부대시설 사용변경에 따른 일부 금액 반환 청구에 대하여 조례에 일부 반환 규정이 없고 사용 8일전에 제출한 취소원에도 불구하고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음.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자산취득비로 ◎◎용 음향 실링 마이크 외 00종 ***,***천원을 구입하였음에도 물품관리대장 또는 전산망(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시설비 지출 대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의 지출

- “◎◎◎◎◎ 녹지구역 예초 및 제초공사” 등 0건의 조경유지·관리공사와 “20**년 ◎◎◎◎◎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진단용역” 등 총 0건의 조경유지·관리공사 및 시설물 정밀점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시설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과 다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한 사실이 있음.

5.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음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비치하지 않아 인사이동에 따라 신용카드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인수인계 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매월 1회 분임재무관(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하나, 20**.01 ~ 20**.06월까지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보고(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청원경찰 사기진작 격려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사업소내 현업근무자를 격려하고자 간담회 실시 후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임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출건은 시책추진사업과 관련없는 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한 간담회 실시 후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7.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 휴가직원 및 관외출장여비로 식비(3식)를 지급한 직원까지 포함하여 특근매식비 총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8.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계획에 의하면 공고기간을 12.15~12.17(3일간)으로 충분한 응모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계획서상 면접채점표의 경력사항이 없는데도 면접자 ○○○의 경우 5점(면접관 1)과 8점(면접관 2)을 부여하였고, 합계점수가 77점 인데도 82점으로 오기하였고,
- ●●동 ☆☆☆☆☆ 기간제근로자 모집계획에 의하면 공고기한을 4일로 하였고 채용조건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자, △△△△학전공자, ○○교육등 자격증소지자, ◇◇◇◇ 근무경험이 있는 자 우대로 공고하면서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예의·품행·태도 등 기본사항 20점, 책임감·근면성·협동성 20점, 업무 이해도 30점, 고객대응 업무처리능력 30점으로 평가 항목을 정함으로 공고문에 명시한 객관적인 전력이 한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음.

9. 기술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감독관 임명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공사감독관(공사감독자)”이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20**년 △△☆☆☆☆ LED 전등교체공사” 등 0건의 전등교체공사, 도장공사 등에 대하여 기술직원을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과 다르게 해당 분야의 기술직원이 아닌 사서0급, 사무운영0급 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10. 옥상 난간 미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냉난방기 실외기의 상시적인 유지점검과 옥상 방수 및 배수시설 점검 등을 위해서는 옥상 슬래브의 안전난간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구역 밖으로의 출입이 불가피한 여건이므로 옥상 슬래브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안전난간을 추가 설치(설치 필요연장 약 **m)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

11. 연체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 장기 연체도서에 대하여 전출 및 해외이주 등 회수불능 자료로 분류하여 도서원부에서 제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서관 000권, ☆☆☆도서관 000권, △△도서관 00권 등 총 000권의 도서를 최대 0년 동안 장기연체 미반납 자료로 등록한 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1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회계과에서 군산◎◎◎◎◎ 건물 총 면적으로 가입하고 일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된 식당의 면적(***.m²)만큼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중 가입하게 하는 등 허가조건 및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공유재산 사용자가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관계부서와 협의 없이 *,***원을 초과하는 음료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용자가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계장치를 청소하고 1주 이상 청소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상태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점검표에 기록된 사항이 없고 커피 및 온음료기 입구에 찌든 때가 끼었음에도 자동판매기 사용자가 물통을 들고 온다는 것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청소하였을 것이라 미루어 추정하여 판단하는 등 허가조건에 이행사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용역 분할 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로 2015년 **백만원, 2016년 **백만원, 2017년 **백만원, 2018년 ***백만원씩 단일사업으로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예산 편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 및 전산시스템별로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있음.

14. 세출예산(강사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 △△△△강좌 강사수당 등은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301-09)이나 기타보상금(301-11)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하여 △△△△강좌 강사수당 등을 총 00건,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5. 피복 구입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사무관리비(201-01)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 0차례 피복을 구입하면서 ○○○○에게 피복 지급시 지급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소속 직원에게 00벌의 민방위복(***,***원)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16.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군산시 ○○○○○○○○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부서가 신설부서로 개편된 이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7. ☆☆에 관한 사항

-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을 기증받을 시에 기증자로부터 기증서 약서를 받아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상위법이 2016. 11. 29일 개정되었음에도 상위법에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증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2018. 07.12 조례를 개정하였음에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증 ☆☆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8. □□□□□□ 전시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 전시장 조성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정산 원가계산서, 정산 내역서, 정산 일위대가표와 같이 “○○쇼케이스 설치”에 대한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견적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으로써 원가계산서상에 부가가치세를 중복 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설계 변경의 적절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 변경 당시 기준 “○○쇼케이스 설치” 견적단가의 부가가치세 정산액인 금***,***원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산대상금액인 금***,***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19. 시설비 대상사업(초화류 식재)에 대한 재료비로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 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료비로 집행한 “○○○ 및 目目目지역 초화류 구매” 등 00건의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 시설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과 다르게 재료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물품구매 계약 00건의 동일 계약상대자 1인의 견적서에 대하여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의 비교 검토 없이 계약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견적 가격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0. 정책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정책 세미나 개최계획에 있는 토론자를 변경계획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변경한 토론자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정책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 및 토론자의 강사료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이력(경력)서를 첨부하지 않고 임의로 등급을 정하여 ○○○ 외 0명에게 강사료 ***,***원을 과다 지급하고, 공무원인 외래 강사 ○○○에게 원고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21. ◆◆◆투어 기념품 관리에 관한 사항

- ◆◆◆투어 참가자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수령자의 확인 등을 받지 않았으며, ◆◆◆투어 기념품 관리를 위한 소모품 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기념품에 대한 사용 및 제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2. 물품의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의 수량이나 상태 등 구입 물품의 구매계약 내용들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사¹⁾·검수²⁾확인(지출결의서상 날인)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3. 공금예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서 청우회비 통장은 부서 직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계좌이므로 계좌명을 부서 직원 중 내부관리자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계좌명을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과 청우회'로, 사용인감을 '○○○인'으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2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관외출장자가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원을, 시간외근무시간 과다산정으로**,***원을, 총**,***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검사 :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품되는 물품과 규격조건과의 일치여부와 규격상 합격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기술적인 행위
2) 검수 : 물품의 보관이나 출납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검사가 완료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인수하는 것을 말함

2018. 目目면 자체감사 결과

1 처분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계	10 건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원천징수 소홀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대원 편성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역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	
7	○○마을 하수관로 포장공사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8	공금예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9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10	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경로당에서 공람명부 서명란에 동일한 필체로 일괄 날인되어 있으며 회장회비, 노인회비로 각각 *만원,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20**.11.28일 경로당 김장재로 구입으로 회원 2명에게 각각 **만원을 계좌송금한 뒤 **만원을 현금으로 통장에 재입금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였고
- ○○경로당의 경우 정산서 공람명부 서명란의 필체가 일관되게 날인되어 있고 ○○○ 택시비로 5회에 걸쳐 **,***원, △△△△에서 **,***원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여 정산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원천징수 소홀

-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년부터 20**년 현재까지 강사 수당으로 총 **,***천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천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읍면동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및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민방위대원 편성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민방위대 편성이 확정된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년에는 민방위대를 편성조차 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19**. 7. 16.일 구매하여 물품대장에 등재된 유아용교구장이 현재까지 활용품으로 되어 있어 그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년에 구매한 소화기를 2018년에 모두 교체하고도 물품관리대장에서 불용처분 하지 않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스탠드 및 컴퓨터모니터, 파손된 의자 등을 물품 창고에 그대로 방치하고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활용품으로 보고하는 등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방역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

-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유류구입처에서 발행한 전표(유류구입비)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유류수불대장, 방역소독 일지를 기록·관리하며 유류비 정산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마을 하수관로 포장공사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마을 하수관로 포장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가 아님에도 총 금***,***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였으며, 준공검사 시 도급자가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순공사비 기준 총 금***,***원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산대상금액인 총 금***,***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1.12. ○○마을 하수관로 포장공사의 준공서류 및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푸집 설치 14.4㎡가 시공되지 않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정산대상금액인 금***,***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8. 공금예금 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우회비 통장은 부서 직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계좌이므로 계좌명을 부서 직원 중 내부관리자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좌명을 ‘○○면사무소’로, 사용인감을 ‘군산시○○면장 의인’으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9.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휴가 3일 이상인 경우에 1명의 직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편성한 사실이 있음.

10. 급량비(특근매식비)에 관한 사항

- 관외출장여비로 식비(3식)를 지급한 직원까지 포함하여 특근매식비 총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2018. 三三면 자체감사 결과

1 처분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계	11 건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2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출 부적정	
4	●●● 인근 콘크리트 포장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누락에 관한 사항	
8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택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0	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0개 경로당에서 가전제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간이세금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경로당의 경우에는 야유회 관광버스 임차료, 상패제작 등 예산을 경로당 운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내역을 확정하여 시 관련 부서에 정산 보고하는 등 경로당 보조금 지원 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행정△급 ○○○은 휴직기간 6개월을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연가보상일수 산정 오류로 인한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에 따르면 위원 중 공무원 및 농협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심사위원 회의 참석수당(100천원/1회 이내), 출장여비 (1회당/10천원 이내), 회의 운영비(회의 개최 1회당 70천원 이내), 사무용품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 항목 외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격려차원의 간담회를 20**.10.01.일 개최하고 심사위원 및 직원 **명에 대한 식비 **,***원을 ◎◎◎식당에서 지출하였으며, 회의 운영을 위한 다과비는 회의개최 1회당 70,000원 이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원 초과한 **,***원을 지출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 인근 콘크리트 포장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공사현장 및 준공서류를 확인한 결과,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과 보조기층 운반 각각 14m³, 보조기층 사급자재비 17m³를 시행하지 않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정산대상금액인 금**,***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체 19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6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성위원의 수가 줄어들고 20**년에는 단 1명의 여성위원만 위촉하는 등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매년 개시 1월 이내 주민자치위원 주요인적사항을 공고·게시하여야 함에도 20**년에는 공고·게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20**년 ~ 20**.**월까지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를 작성관리 하지 아니하였고 20**년도 주민자치위원 위·해촉대장의 작성이 누락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채용 시 매년 모집공고 후 계약을 통해 채용하여야 함에도 요가강사 〇〇〇 및 국악강사 〇〇〇, 노래강사 〇〇〇에 대해서는 최초 채용 이후 매년 모집공고 및 계약 없이 계속하여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였으며, 강사 수당으로 총 **,***천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천원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19**.02.01.일 구매하여 물품대장에 등재된 가리개용 칸막이가 현재까지 활용품으로 되어 있어 그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컴퓨터모니터, 냉온수기, 프린터 등을 물품 창고에 그대로 방치하고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활용품으로 보고하는 등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누락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분실 발급자 〇〇〇 외 7명의 재발급 신청서에 5,000원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인증을 하지 않아, 세외수입인 인증기용 증지수입 **,***원을 징수 누락한 사실이 있음.

8.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5종류³⁾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20**.04.09 ~ 20**.09.21일까지 제세공과금 등 00건을 서울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9. 재택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재택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안내에 따르면 재택근무수당 지급 충족 요건으로 평일은 근무종료시점인 18: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21:00이후 퇴근시에만, 휴일은 당직시작시간인 09: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12:00이후 퇴근시에만 재택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며, 반드시 09:00전까지 출근체크, 12:00시 이후에 퇴근 체크를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09:00 이전 조기 출근 후 3시간 근무이후 퇴근시는 재택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휴일 재택근무시 당직시작시간 09:00이후에 출근체크하여 재택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택근무자 행정△급 ○○○ 외 0명에게 재택근무수당 총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10.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관외출장여비로 식비(2식 또는 3식)를 지급한 직원까지 포함하여 특근매식비 총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차량유류수불부,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이력카드,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11.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20**.01월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받았으나,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인사이동 등에 따라 신용카드 보관·관리자(보관책임자, 지출원)가 변경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직원 상호간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보관·관리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